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633

발의연월일: 2023. 3. 15.

발 의 자:신동근・한병도・유동수

진선미 · 홍성국 · 김태년

김성화 · 김병욱 · 김주영

민병덕 · 양기대 · 서영교

고용진 · 이수진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·중견기업 8%, 중소기업 16%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.

최근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데이어,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·중견기업은 8%에서 15%로, 중소기업은 16%에서 25%로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음.

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을 보호·육성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

고 있는 한편,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은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 등에 못지 않게 경제·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산업임.

또한 전동화·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터리·반도체 등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국내 제조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이에 세액공제율을 대·중견기업 8%에서 15%, 중소기업 16%에서 2 5%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,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,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,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)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)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15(중소기업은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
  - 가) 반도체
  - 나) 이차전지
  - 다) 백신 등 바이오산업
  - 라) 디스플레이
  - 마)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
  - 바) 미래형 이동수단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의 개 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화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	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	
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	
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	
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	
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	
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	
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	
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	
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	
에서 공제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제금액	2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세	7}
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	
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	
의 3, 중소기업은 100분의	
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	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	
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<u>.</u>

- 1) (생략)
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8(중소기업은 100분의 16)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(생략) ② ~ ⑤ (생략)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 야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15(중소기업은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
  - 가) 반도체
  - 나) 이차전지
  - 다) 백신 등 바이오산업
  - 라) 디스플레이
  - <u>마)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</u> 탄소중립산업
  - 바) 미래형 이동수단
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